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redacted]

통지번호	CP102
과세 기간	2008 년 6 월 30 일
통지 일자	2009 년 2 월 9 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연락처	[redacted]

[redacted]

귀하의 2008년 6월 30일자 Form 941에 대한 변경사항

납부할 금액: $6,698.72

귀하의 2008년 6월 30일자 Form 941에 계산 오류가 있고, 이것이 납세 보고서의 아래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액 계산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귀하의 환급액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귀하의 미납 세액이 $6,698.72 입니다.

청구내용 요약

귀하의 세액	$4,913.04
미신고 과태료	1,105.43
미납 과태료	130.62
미입금 과태료	373.20
이자 부과액	176.43
2009 년 2 월 19 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	**$6,698.72**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이 통지내용을 검토한 후,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정보에 대비하여 변경내용을 비교하십시오.

귀하가 이 변경내용에 동의할 경우

- 추가적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금액 $6,698.72 달러를 2009년 2월 19일까지 납부하십시오.

뒷 면에 계속...

IRS

[redacted]

통지번호	CP102
통지 일자	2009 년 2 월 9 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납부

- 수표나 머니 오더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
- 귀하의 지급내역과 통신문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redacted] 과세 기간 '08년 6월 30일 및 양식 번호 941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009.2.19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 **$6,698.72**

[redacted]

0000 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계속**

귀하가 이 변경내용에 동의할 경우 – **계속**

- 귀하가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에 등록된 경우, 수표나 머니 오더 대신에 그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액을 납부할 수 없으면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시고, [redacted] 번으로 전화하여 잔액 납부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십시오.

귀하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redacted]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계좌를 검토하십시오. 저희에게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분리하여 이를 통신문이나 문서를 동봉하여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
- 귀하의 연락이 없으면 귀하가 이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간주합니다.

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2009 년 2 월 19 일까지 $6,698.72 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5%의 연방 세금 입금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2009 년 3 월 2 일 이후의 미납 잔액에 대해서는 기타 과태료와 이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2008 년 6 월 30 일자 세금 보고서 변경사항

아래 이유 때문에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귀하의 총 세액 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귀하의 세액 계산

설명	IRS 계산 내역
원천징수 소득세	$0.00
과세대상 사회복지보장 임금	1,914.34
과세대상 사회복지보장 팁	0.00
과세대상 메디케어 임금 및 팁	447.70
조정 전 총 세액	**$4,913.04**

[redacted]

통지번호	CP102
통지 일자	2009 년 2 월 9 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연락처 정보

[redacted]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redacted]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귀하가 통신문을 동봉하였으면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통신문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redacted], 과세 기간 '08 년 6 월 30 일 및 양식 번호 941 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본 전화번호	통화하기 좋은 시간	보조 전화번호	통화하기 좋은 시간
	☐ a.m. ☐ p.m.		☐ a.m. ☐ p.m.

IRS

통지번호	CP102
과세 기간	2008 년 6 월 30 일
통지 일자	2009 년 2 월 9 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페이지 3 / 5	

귀하의 2008 년 6 월 30 일자 세금 보고서
변경사항 – **계속**

세금 조정

설명	IRS 계산 내역
소수 센트	$0.00
병가 급여 조정	0.00
팁 및 단체정기생명보험 조정	0.00
당해 연도 소득세 원천징수	0.00
전분기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0.00
연방 소득세 특별 추가분	0.00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특별 추가분	0.00
조정액 합계	**$0.00**
조정 후 세금 총액	**$4,913.04**
세금 입금액 합계	$0.00
COBRA 보험료 지원금	0.00
이전 과세기간의 과다납부 적용액	0.00
기타 세액공제 및 납부액	0.00
세금 입금액, 세액공제 및 납부액 합계	**$0.00**

2008 년 6 월 30 일자로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하여 귀하의 계정에 적용된 납부액

저희 기록에 따르면 이 계정에는 납부액, 입금액, 공제액이 없습니다.
저희 정보가 틀리면 [redacted]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과태료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과태료

접수일	지연 개월 수	미납액	과태료 요율	금액
'08.12.31	5	$4,913.04	5.0%	**$1,105.43**

기한을 경과하여 납세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5.0%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부과 금액은 5개월분 또는 미납금액의 25%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인 납세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기한 경과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최소 100 달러 또는 미납세액의 100% 중에서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한 달이 안되는 부분은 한 달로 계산합니다. (내국세법 섹션 6651)

미입금 과태료

만기일	수금일	지연 일수	납부 유형	과태료 요율	미납 금액	과태료 금액
'08.5.15	미수금	-	-	10%	$471.24	$47.12
'08.6.16	미수금	-	-	10%	1,854.52	185.45
'08.7.15	미수금	-	-	10%	1,406.26	140.63
미입금납 과태료 합계						$373.20

뒷 면에 계속...

미입금 과태료 – **계속**

귀하가 해당 세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입금하지 않음
- 충분한 세금을 입금하지 않음
- 세금을 직접 연방국세청(IRS)에 납부하였음
- 미승인 금융 기관에 세금을 입금하였음
- 법률에 따라 세금을 전자식으로 입금하지 않음

세금 입금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15 (회보 E) '고용주 세금 안내' 또는 간행물 51, (회보 A) '농업 고용주 세무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미납 과태료

일자	지연 개월 수	미납액	과태료 요율	금액
'09.2.28	7	$3,732.02	0.5%	**$130.62**

납기일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입니다. 한 달의 일수가 부족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합니다. (내국세법 섹션 6651)

과태료의 면제 또는 축소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재무 기록의 손실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축소해주도록 요청하려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고려할 과태료 명시 (예: 2005년도 지연 신고 과태료).
-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 진술 내용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편으로 발송함.

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 귀하의 설명 내용이 과태료를 축소 또는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IRS 가 잘못 기재한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

IRS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에 서면 조언을 요청했는지 여부
-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였음
- 귀하가 담당자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
-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담당자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하려면 '환급 청구 및 경감 요구서' (양식 843)를 작성하여 귀하가 납세 보고서를 제출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 해당 IRS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irs.gov를 참고하거나 [redacted]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자 부과액

법률에 따라 세금 납기일부터 전액을 납부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내국세법 섹션 6601).

이자 부과액 - 계속

설명	금액
총 이자	**$176.43**

아래 표는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되는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redacted]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기간	이자율
2008.7.1~2008.9.30	5%
2008.10.1~2008.12.31	6%
2009.1.1 일 이후	5%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102.
- 세무 양식,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귀하의 중소기업이 연방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준법 집행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중소기업 규제완화이행촉진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www.sba.gov를 방문하여 키워드 “ombudsman”을 검색하십시오.
-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